

시흥시 대야·신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정

1.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정의

-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

2. 관련 근거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 · 운영)

3. 세부내용

① 운영체계

신청	배정	요금납부	운영방식
연 2회(11월, 5월)	연 2회(1월, 7월)	연 4회(12월,3월,6월,9월)	시간제(야간) 운영

② 신청안내

[처리절차]



○ 신청자격

- 대야·신천동에 거주하고(주민등록 기준) 차량등록 되어 있는 주민
 - 대야·신천동 내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거주하는 재직자(증빙서류 제출)
 - 상위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및 사용 불가
- * 신청 불가 차량: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영업용 일반택시, 승합 16인승 이상, 화물 1.5톤 이상, 트레일러, 카라반 등) 및 캠핑카, 타인 명의 차량
- * 타인 명의 차량: 타인 명의 차량은 신청 불가하나 직계 가족 차량, 회사 차량, 렌트카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

○ 회원가입

구 분	내 용
인터넷 회원가입	개인정보처리동의 → 휴대폰 인증(본인확인) → 회원가입 진행
서면 회원가입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제출 → 휴대폰 인증(본인확인) 및 회원가입 업무를 관리자에게 지원받아 회원가입 진행

*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으로 개인정보처리 동의 후 비대면 연동 확인

○ 신청서류

구 분	내 용	
공통 확인서류	등본상거주지확인, 자동차등록정보	
추가 제출 서류	가족 명의 차량	가족관계증명서
	렌트카	렌트카계약서
	회사차량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재외동포) 중 1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 서류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신청방법

- ① 홈페이지(park.siheung.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② 아이디(차량번호),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③ 주차구획 신청

* 주차면 최대 3개 구획까지 신청 가능

* 정기 접수: 주소지 중심으로 200m 이내 주차구획 신청

수시(남은구획) 신청: 주소지 중심으로 300m 이내 주차구획 신청

③ 배정안내

○ 배정방식 : 연 2회(6개월단위 배정제)

○ 배정원칙 : 1가구 1구획 배정

- 1가구가 추첨을 통해 2구획 이상 배정받을 경우, 원하는 1구획 선택 후 요금 납부.
- 2구획 이상 요금 납부할 경우 구획 강제 배정 취소

[차량 추가 등록]

- 1개 구획에 본인 및 가족 차량 추가 2대까지 등록 가능(총 3대 이용 가능)
- 경차 구획은 경차만 추가 등록 가능
- 사용요금을 감면받은 차량이 가족 차량 등록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제외차량: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및 캠핑카

○ 배정방법

구 분		내 용
1차 배정	전용 구획	구획번호와 지번을 매칭하고 DB화한 주소에서만 신청받아 랜덤추첨 하는 방식(건물에 바로 붙은 구획은 그 건물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주차 구획과 인접한 건물에서 신청한 거주자가 여럿일 경우 랜덤 추첨)
	추첨 구획	전용구획 배정에서 탈락된 사용자를 포함하여 해당 구획을 신청자를 대상으로 랜덤 추첨하는 방식
2차 배정		1차 배정 이후 미배정 구획 발생 시에 관리자가 랜덤 방식으로 정해진 순위를 이용하여 차순위 사용자에게 배정
수시 신청	2차 배정 이후 미배정 구획(남은 구획)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	

※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전용구획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전용구획을 추첨구획으로 전환

○ 배정취소

-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도로공사 및 신축공사 등 외부여건에 의한 구획 삭제 시 미리 통보하여 배정 취소
(※ 사용자 이의신청 권한 없으며 이용자가 직접 주차장 확보)
- 영업행위 등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 신청서를 허위기재한 경우

④ 결제안내

○ 결제방법 :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중 택1하여 납부

※ 기본으로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시흥시 대야·신천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자가 결제방식(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을 변경하여 납부 가능

○ 사용시간 및 이용금액

구분	시간	요금(1개월)	이용자
주간	09:00~18:00	무료	누구나 이용 가능
야간	18:00~09:00	15,000원	이용시간을 지정받은 차량

○ 요금납부

- 분기별(3개월) 단위로 납부
- 배정 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하여 배정 안내(구획번호, 가상계좌, 이용요금 등)
- 카카오 알림톡을 받지 못하는 사용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 발송

○ 감면대상

감면구분	장애인 본인명의이며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국가유공자 본인명의이며 국가 유공자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경형 승용차 (1000cc 미만)	저공해 차량
할인률	50%	50%	60%	60%

-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시흥시 주차장 조례 제6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적용
- 주차요금 감면 중복 시 해당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환불사유

- 이사, 폐차, 차량소유권 변동 등 개인 사유로 인한 경우
 - 도로공사 및 신축공사 등 외부여건에 의한 구획이 삭제 된 경우
- ※ 차량이 주차구획 크기를 초과하여 민원 발생시에는 차량통행 및 안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배정 취소 후 환불조치

○ 요금환불

- 시흥시 대야·신천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불 신청(방문 신청 가능)
-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환불 날짜 계산(일할 30일 계산, 십월 단위 절삭)
 - ※ 환불금액 = 일할계산요금 × (사용예정일수 - 실사용일수)
- 정해진 분기(3개월)가 끝나는 마지막 날짜기준 7일 이내에 일괄 환불
- 회원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환불 가능

⑤ 무단주차 단속

○ 무단주차요금 부과 : 시흥시 주차장 조례 제 12조에 의거 **무단주차 요금 15,000원** 부과

핸드폰 번호가 차량에 부착 되어 있는 경우	핸드폰 번호가 차량에 부착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화 연결 될 경우 : 5분 이내 이동조치 요청, 이동하면 부과하지 않음	
전화 연결되지 않을 경우 : 3회 전화계도 후 부과	신고 시간으로부터 즉시 부과

- ※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무단주차 시 예고나 경고없이 즉시 단속 가능
- ※ 주차구획을 걸쳐(침범) 주차 시 무단주차요금 부과

○ 무단주차요금 납부 방법

- 단속원 단속 시 발급된 안내문을 통한 가상계좌 납부
 - 시흥시 대야·신천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납부 가능
 - 현장 고지 후 20일 이내 의견진술서 제출 없이 미납일 경우 납부 고지서 발송
 - 고지서 발송 이후에도 미납 시 독촉 및 압류
- ※ 무단주차 행위자는 차량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적발 당일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할 수 있음

○ 무단주차 차량 신고

- 신고 방법

구분	시간	신고방법
단속원 근무시간	평일 18:00~22:00	단속원에게 직접 신고 / 010-6739-7716
단속원 근무시간 외	평일 22:00 ~ 익일 09:00, 주말 및 공휴일	안전신문고 신고 (사용자가 무단주차 증거 자료 제시)

- 단속원 근무시간 내 안전신문고 신고 시 무단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음
- 무단주차 요금은 운영시간(18:00 ~ 익일 09:00) 기준 1회 부과(중복 부과하지 않음)

⑥ 사용자 이용수칙(유의사항)

- 이용금액이 입금 마감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배정자에게 재배정 됨
- 배정자는 이용시간(18:00 ~ 익일 09:00)에 주차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간에 배정구획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강제로 이동 요청할 수 없음
- 주차장소는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배정받은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 양여할 수 없음
- 배정받은 차량 외에 본인 소유의 다른 차량도 주차할 수 없으며, 차량번호 등 변경 시에는 안전생활과 관리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다만, 배정받은 구획에 배정받은 차량 외에 추가 주차를 원할 경우 차량추가 등록은 본인명의, 가족 명의 경우만 가능하며, 최초 배정받은 차량 외 추가 2대까지 가능
-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차장 내 사건 ·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이에 따라, 외부 환경 요인 및 차량의 운행 · 주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차량 · 시설물 · 제3자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음
- 주차구획 신청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위치를 확인하고, 주차구획 크기 및 수목 관련 이물질(낙엽, 수액, 조류 배설물 등) 낙하 가능성은 충분히 인지한 후 신청하여야 함.
- 주차 방해를 목적으로 불법 적치물을 설치 할 경우 행정계도 없이 무조건 수거함
- 배정받은 주차구획은 배정자가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함